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삼척시(건축과)	심의일자	2024. 3. 19. ~ 2024. 3. 26.
건축종별	[●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삼척시(관광개발과)		
대지현황	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		
	지번 207	관련지번 외 4필지	
	대지면적 55,057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관내지역, 기축사유제한구역, 임업용산지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5,045.5㎡	건폐율 26.5%	층수 힐링허브-지상2층 파머스-지상1층 레이저-지상2층
	주용도 관광휴게시설	구조 철근콘크리트조	건축물 동수 3동
	최고높이 9m	용적률 28.4%	연면적 합계 5,465.5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
	(계획)분야	<p>○ 바다에 바로 접해있어 해양환경에 노출되므로 각 건축물과시설물은 해풍과 염해의 물리적 작용을 고려하여 건축재료와 시설재료는 해풍과 염해에 대한 내구성 향상 방안을 마련토록 설계지침 기본방향에 기재토록 할 것.</p> <p>○ 조경계획을 함에 있어서 조경수 역시 해풍과 염해를 고려한 수종으로 식재토록 설계지침 기본방향에 기재토록 할 것.</p> <p>○ 삼척힐링 네이처랜드 조성사업이 해안에 근접한 위치에 조성하는 관계로 염분에 강한 건축재료를 사용할 것을 명시하면 좋겠습니다.</p> <p>○ 과업지시서 p21 2)조경수목[조경수의 경우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여야 한다.]라고 과업지시서에 언급이 되어있으나 이를[조경수의 경우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하고 해풍과 염해를 고려한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.]라고 변경하면 좋겠습니다.</p> <p>○ 삼척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Re-visit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구상이라 판단됨.</p> <p>○ 특히 힐링 허브 스테이션과 파머스 스테이션, 레이저 스테이션 각각의 건축물이 주변 경관과 목적성에 맞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됨.</p> <p>○ 단, 힐링 허브 스테이션 부근의 전시공간은 각별히 신경써주길 당부함. 자칫하면 해안도로에 위치한 비치조각공원처럼 유명무실한 공간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.</p>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●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삼척시(건축과)	심의일자	2024. 3. 19. ~ 2024. 3. 26.
건축종별	[●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삼척시(사회복지과)		
대지현황	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		
	지번 361	관련지번 외 3필지	
	대지면적 1,809.85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도시지역, 제2종일반주거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623.07㎡	건폐율 34.43%	층수 3층
	주용도 노유자시설	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	건축물 동수 1동
	최고높이 15.85m	용적률 84.54%	연면적 합계 1,530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
	(계획)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설계공모지침서 p12 2째 줄 관장실은 상담실을 포함하되 사무실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간을 상호 유연하게 연결한다. 있도록 → 있도록 오타 수정할 것.○ 1층 평면계획을 보면 주출입구 들어서서 바로 오른쪽으로 사무실 관리자 공간이 자리잡고 있음. 실시설계 시 주민 협의 후 확정진다 했으나, 인포메이션이 정문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은 당연하나, 관리자공간을 정문 가까운 곳에 위치시키는 것보다는 내방객 위주의 시설이 정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○ 또한 현재 계획으로는 남향에 사무공간과 발코니 위치, 상대적으로 사용자들 공간은 북향을 향하고 있어 겨울철 사용에 다소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됨. 이부분도 실시설계시 고려해 줄 것.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●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